

[공모펀드 변경안내]

가. 펀드명: 유진챔피언공모주증권투자신탁1호(주식혼합)

나. 변경시행일 : 2020년 7월 15일(수)

다. 변경 대상 서류: 투자설명서, 간이투자설명서, 집합투자규약

라. 변경 내용: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이재선 → 이지선)

[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[1 120 1 20 11 1			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	
요약정보			
운용전문인력	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재선	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지선	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	<u>〈신 설〉</u>	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(이재선 → 이지선)	
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	<u>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재선</u>	<u>책임운용전문인력</u> : 이지선	
사항			
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	①~⑥(생략)	①~⑥(현행과 같음)	
대상, "가.투자대상"	⑦집합투자증권 투자비율 5%이하	⑦집합투자증권 투자비율 <u>40%이하</u>	
	®~ⓑ(생략)	8~⑮(현행과 같음)	

[간이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운용전문인력	<u>책임운용전문인력</u> : 이재선	책임운용전문인력 : 이지선

[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]

항 목	정정 전	정정 후
제18조(투자대상자산	1~4 (생략)	1~4 (현행과 같음)
취득한도)	5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<u>투자신</u>	5. 집합투자증권 등에의 투자는 <u>투자신</u>
	탁 자산총액의 5% 이하로 한다. 다만,	탁 자산총액의 40% 미만으로 한다.
	법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	
	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	
	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할	
	<u>수 있다.</u>	
	6~10(생략)	6~10(현행과 같음)